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52
----------	------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3일 이소라 의원 외 26명
-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4월 25일 상정·의결 (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소라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4곳의 보조기기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기기센터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에 따른 보유 기기가 부족하고 직접 지원(교부)이 아닌 대여사업만 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 이에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에 있어 실태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사용되도록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과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에 규정함(안 제8조제2항의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4. 4. 12. ~ 4. 16. (의견없음)

### I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보조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이 충분치 않아 예산의 효율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개정안의 주요 사항 검토

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8조제2항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 조례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생략) 〈신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p><u>에 관한 사항</u></p> <p><u>2. 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u></p> <p><u>3.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u></p> <p><u>4.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 등에 관한 사항</u></p> <p><u>5. 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u></p> <p><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p>

-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 〈표1〉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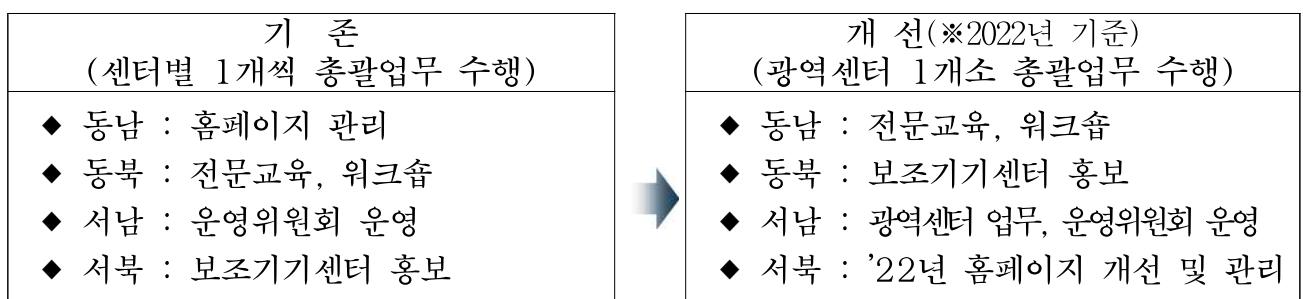
센터명	위탁법인	관할 자치구	인력	위탁기간
동남	(재) 푸르메	강동, 광진, 성동, 송파, 강남, 서초	7명	'21.5.1.~'24.7.28.
동북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성북, 동대문	7명	'23.1.1~'25.12.31
서남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7명	'23.1.1~'25.12.31
서북	(재) 푸르메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 용산, 중구	7명	'21.5.1.~'24.7.28.

- 즉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동 운영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북보조기기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총괄 운영하고 있음.

#### 〈표2〉 연도별 광역센터 기능 및 운영위원회 운영 기관

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기관명	서남센터	동북센터	서북센터	동남센터

- 4개의 보조기기센터가 매년 순환하면서 광역센터의 기능과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21년 행정사무감사 적사항으로서, 센터간 컨트롤타워 부재로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이 미흡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이용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광역센터를 지정, 센터간 역할분담 및 기능조정으로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선됨.



※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2022년 기준)

-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서비스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운영에 대한 안전 심의 및 조정·협의라 할 수 있음.

### 〈표3〉 운영위원회 현황

(단위:명)

구 분	당연직		외부위원	합계
	보조기기센터 센터장	서울시 주무 팀장		
인 원	4명	1명	6명	11명

※ 출처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제출자료

### 〈표 4〉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서비스 지침

제2조 (위원회) ① 센터는 센터 운영의 개방을 위하여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업무를 조정·협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규칙·세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항

- 단, 서울시 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아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은 아님.
  - 「사회복지사업법」 36조<sup>1)</sup>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계획

1)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제1항제1호) 등을 심의하고,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받는(제3항제1호)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라 할 수 있음.

## 나.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보조기기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보조기기센터 자체규정으로 운영되었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센터의 운영 계획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음.
- 특히, 심의사항으로 보조기기 구매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사전 점검하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br>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전·사고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br>

**참고1****최근 2년간 운영위원회의 실적**

## ○ 연도별 추진현황

구분	추진 횟수		주요안건	비고
2022년	3회	1차	1.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2. 2022년 추가경정 예산 및 예산전용 보고 3. 보조기기 임대료 및 보증료 경감방안 보고 4. 신규운영 위원 선임	
		2차	1. 22년 업무추진현황 보고 2. 임대이용료 및 보증료 경각 추진 계획(안) 3.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서비스 지침 개정 4. 신규운영위원 위촉 보고	
		3차	1.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비스 지침 개정(안)	
2023년	1회	1차	1. 2023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 2. 2023년도 예산 추가경정 및 전용 예산(안) 3. 2024년 사업계획(안) 4. 2023년 운영위원 연임 5. 신규위원 위촉 6. 서울시(동북·서남)운영규정 제정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 요지**

### **1. 수정이유**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2. 수정의 주요내용**

-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2항 제3호)을 삭제하고,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제2항제4호)

##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52
----------	------------

제안연월일 : 2024년 4월 25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2항 제3호)을 삭제하고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제2항제4호)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생략)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설〉	<p><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u></p> <p><u>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u> <u>· 평가에 관한 사항</u></p> <p><u>2. 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u></p> <p><u>3.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u></p> <p><u>4.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 등에 관한 사항</u></p> <p><u>5. 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u></p>	<p><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u></p> <p><u>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u> <u>· 평가에 관한 사항</u></p> <p><u>2. 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u></p> <p><u>〈삭제〉</u></p> <p><u>3.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 등에 관한 사항</u></p> <p><u>4.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u></p> <p><u>5. 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u></p>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
  3.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5. 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운영위원회 운영)</p> <p>① (생략)  <u>〈신설〉</u></p>	<p>제8조(운영위원회 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u>관하여 심의한다.</u></p> <p>1.<u>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u>  <u>에 관한 사항</u></p> <p>2.<u>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u></p> <p>3.<u>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u>  <u>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u>  <u>등에 관한 사항</u></p> <p>4.<u>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u>  <u>사항</u></p> <p>5.<u>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u>  <u>사항</u></p>
<p>② (생략)</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